

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0-30호

「우편법 시행령」 및 「우편법 시행규칙」의 개정에 따라 불필요한
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괄 폐지합니다.

2010년 9월 1일

우정사업본부장

우정사업본부 고시 폐지에 관한 고시

1. 폐지고시 내역

- 가. 우편요금 후납 담보금의 제공 면제대상 고시(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00-5호)
- 나. 사전계약 발송하는 소포 및 국제특급(EMS) 우편물의 우편요금 후납 담보금 제공 면제대상 고시(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06-14호)
- 다. 서울양천(서서울)물류센터 소포발착업무 시험운영 위탁 기관과 위탁 범위 지정 고시(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08-28호)
- 라. 여유우편물의 요금감액 요건 및 감액범위 고시(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08-61호)
- 마. 동서울물류센터 소포발착업무 시험운영 위탁기관과 위탁범위 지정 고시(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09-21호)

2. 폐 지 일 : 2010년 9월 1일